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3-122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3-123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124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10
2023-125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3
2023-126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22
----------	----------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다 면밀하고 원활하게 결산검사 하기 위해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 조정(안 제2조)

1) 4명 ⇒ 5명

나. 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재무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 ~ 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결산검사위원회”을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위원의 정수) <u>결산검사위원</u>(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p> <p>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p> <p>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64조에 따른다.</p> <p>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p> <p>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u>제14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u>거창군 결산검사위원</u>(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p> <p>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p> <p>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73조에 따른다.</p> <p>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p> <p>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삭 제>▷ 지방자치법 제29조(시행규칙) 재기재로 삭제(법제처 정비권고)</p>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23
----------	----------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신미정,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 청탁 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3. 8. 30. 공포·시행)된 사항을 우리군 의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나.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 가능한 선물의 범위 등을 확대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3조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 ~ 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 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u></p> <p><u>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u></p> <p><u>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u>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p> <p><u>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u></p> <p><u>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u></p>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의2서식]

거창군의회 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원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24
----------	----------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등에서 규정된 서류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다. 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라. 원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마. 서류 제출 기간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1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거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서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성·보유하고 있는 서류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 ①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서류 제출 요구)

-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서류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25
----------	----------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의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구매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경제기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0. ~ 10.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및 지역 먹을거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 ① 거창군수(이하 “군”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구매 목표 비율은 군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 안내
2. 지역업체 정보
3. 지역상품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군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거창 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해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26
----------	----------

발의일자	2023. 10. 11.
발 의 자	김혜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1. 제안 이유

거창에는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어싱길’, ‘항노화힐링랜드’, ‘승강기 베스트 벨리’ 등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거창군이 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책무를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나. 한자어인 국어를 우리말로 변경
- 다. 목적문 간소화(안 제1조)
- 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중전 안 제2조, 제5조, 제13조)
- 마. 행사, 사업 명, 장소 명 등 명칭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바. 인용조문의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 7조)
- 사. 불필요한 의무조항 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어기본법」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 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 다. 합 의: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10. ~ 10. 16.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통해 거창의 우리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에 따른 우리말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 나. 거창군의회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은 우리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조례보다 우선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이 명칭, 정책명, 사업명, 장소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제5조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우리말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한글 사용 장려를 위한 어문규범 보급과 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거창 주민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